

이 訴訟事件은 略式訴訟事件의 節次에 따라 審理하여 裁判한다.

이렇게 하여 特許無效의 判決이 確定되면 商務省長官은 特許무효의 證明書를 作成하고 그 抄本은 政府公報에 公고하게 되는 것이다.

4. 侵害訴訟 및 罰則

특허에 관계되는 物을 제조하거나 그 方法을 사용하여 特許권을 侵害한 者는 偽造罪를 適用하여 2,000~10,000달러의 罰金 또는 1~6個月 以下の 禁錮에 處하게 된다.

또한 故意로 偽造品을 藏匿하거나 販賣를 목적으로 展示, 또는 國內에 輸入한 者도 위조죄를 犯한 者와 같은 刑罰을 받는다.

그리고 廣告, 看板, 商標 등에 特許를 받지 않고서 特許表示를 하거나 정부의 保證 없이 付記를 하게 되면 1,000~2,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累犯인 경우에는 罰科金을 倍加한다.

② 니카라구아의 特許制度

1. 特許制度 概要

이 나라에서는 工業上 또는 技術上의 發見 또는 發明에 대하여 特許法이 定하는 期間 및 條件下에 獨占的으로 利用할 權利를 發見者 및 發明者가 갖게 된다.

따라서 科學 또는 技術에 寄與하는 機械器具, 裝置製品, 實施方法을 發明한 사람은 特許權의 取得을 위해 出願할 수가 있다.

이미 특허된 발명 또는 발견을 改良한 사람도 追加特許를 출원할 수가 있으며 추가특허권은 原特許權의 殘存期間을 存續期間으로 한다.

特許要件은 國內에서 公共然히 實施되지 않았으면 특허 될 수가 있고 外國人의 발명이 니카라구아에서 특허될 수 있는 것도 當該發明으로 使用되는 方法이 國內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경우 또는 國際條約에 違反되지 않으면 된다.

출원에는 발명의 內容을 說明하는 明細書 및 必要한 書類을 添付하여 발명자 또는 그 代理人이 管轄官廳인 工商省에 提出해야하고 출원서를 受理했을 경우 출원서의 末尾에 日字를 明記한다.

수리된 출원서는 그 概要를 30日 이내에 3회에 걸쳐 公報에 掲載한다.

출원에 대하여 異議申請이 없을 때는 管轄廳은 출원된 특허를 賦與한다는 要旨을 決定한다. 特許存續期間은 5年, 또는 10년이며 特許料는 特許賦與時 250코르도바(250달러)를 納入하고 次年度부터는 每年 最初の 2個月 以內에 同額(250 코르도바)을 납입해야 한다.

特許料滯納에는 20%의 割増特許料가 加算된다.

한편 특허는 다음의 경우에 無効가 된다.

(1) 法院에서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여 특허권이 부여되었다고 判決이 났을 때

(2) 1년동안 특허를 不實施했을 때

(3) 設定된 후 1년동안 實시에 關係되는 事業을 抛棄하거나 특허료를 納入하지 않았을 때

(4) 특허로서 製造하여 市販된 物건이 不良하다고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가 告發했을 때이다.

그리고 發明特許나 改良特許를 받은 者는 適當한 條件으로 그 權利를 讓渡할 수가 있고 移轉에 있어서는 양도된 權利의 行使를 一定한 地域으로 制限하여 明示해야 한다.

한편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까지 禁錮에 處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1) 특허된 物品을 偽造하거나 (2) 특허품인 줄 알고서도 이것을 流通시켰을 때 (3) 특허출원에서 虛偽宣誓를 했거나 (4) 對象이 非合法的인때도 不拘하고 특허된 것처럼 取扱한 때는 이에 該當된다.

特許物에 特許表示 및 特許番號를 붙여야 하는데 이것을 履行치 않은 特許權者는 民事 또는 刑事訴訟에서 當事者資格을 喪失한다.

뿐만아니라 犯行後 3年을 經過한 후 또는 特許權者가 처음 알게된 날로부터 1年을 경과한 후에는 民事 및 刑事訴訟을 提起할 수가 없다.

2. 商標制度 概要

이 나라에서 商標는 그 出所 및 態樣을 公衆이 알고 同種 또는 相違한 他物品과 區別하기 위하여 工業, 農業, 商業製品에 適用되는 記號, 名稱 또는 圖型으로 構成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명칭 또는 도형은 그 指定商品의 生産者에 歸屬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상표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

(1) 單純한 遺傳學上의 명칭 또는 公共機關의 명칭

(2) 美風良俗에 위반되는 기호

(3) 國家의 紋章 및 記章

(4) 現存하는 個人의 이름, 署名

(5) 既登錄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 등이다.

상표의 등록을 管轄하는 곳은 公共事業局이며 登錄願書에는 當事者나 代理人이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출원할 경우에는 委任狀을 提出해야 한다.

그리고 출원서에는 다음의 事項을 기재해야 한다.

(1) 그 상표가 製造標 또는 商業標인가의 區別

(2)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工場(事業場)의 명칭 및 位置

(3) 상표로서 保護하는 物품의 種類

(4) 상표의 複製 3部 등이다.

한편 商標登錄願書가 제출되면 30日 以內에 3회에 걸쳐 公報에 출원의 概要를 公告하고 이 기간 내에 異議申請이 없으면 登錄料의 納入前에 상표의 등록을 登記한다.

그러나 異議申請이 있게 되면 法院에서 正當한 權利者를 가려서 商標權을 賦與하도록 결정할 뿐만 아니라 法院에서는 상표권, 상표등록의 優先權이나 既登錄된 他商標와의 紛爭도 處理하고 있다.

한편 상표의 등록에는 25條소의 등록료를 내어야 하고 10년이 되면 更新할 수가 있는데 更新期間을 지키지 않으면 상표의 獨占使用權은 消滅되지 않지만 상표권의 侵害者에 대하여 提訴할 수가 없게 된다.

상표는 관계물품의 製造設備과 더불어 移轉해야 하고 상표의 이전은 상표로서 보호되고 있는 제품의 工業的, 商業的 開發權利가 隨伴된다.

상표의 등록이 法律에 위반되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同一 또는 類似한 상표가 등록되었을 경우 그 등록은 無效가 되며 등록의 무효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法院이 宣告하는데 無效訴訟은 公益에 관한 것이면 檢事가 直接提訴하는 것이 特徵이다.

③ 온두라스의 特許制度

온두라스에서의 特許要件은 (1) 工業上 新規한 物品 (2) 工業上 製品 또는 結果를 얻기위한 新規한 方法 (3) 完全한 獨創의 方法이던 既知의 方法으로 完成한 것인지를 不問하고 公業상의 新구한 適用 (4) 公業상의 제품을 裝飾하는 新구한 獨創의 圖案 등을 新구한 發明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不特許事由로서는 (1) 이미 公共然히 使用되고 있거나 國內에서 公知된 物이나 方法 그리고 이것들의 改良 (2) 適法으로 取得한 第3者의 權利를 侵害한 物, 方法 및 이들의 개량 (3) 公共秩序, 善良한 風俗 또는 公衆의 衛生을 害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物의 發明 및 方法의 發明에 관하여 1 또는 2 以上의 外國에서 취득한 特許權은 最初의 特許權의 存續期間이 滿了할 때까지는 온두라스에서 併合할 수가 있다.

이 나라에서 特許권을 취득하려면 出願者는 發明의 明細書 3通, 發明의 圖面 3通, 代理人에 의해 출원할 경우 委任狀을 出願書에 添付하여 特許廳에 提出하면

된다.

출원인이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外國에서 特許권을 취득하였으면 外國특허를 취득한 要旨의 證明書를 代理人委任狀에 첨부해야 하며 이위임장 및 證書는 外國駐在 온두라스領事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審査는 特許廳擔當官이 處理하지만 출원에 대한 不服申請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불복신청은 法院에서 處理한다.

제출된 출원서는 官報에 5회에 걸쳐 公告되고 그 후 출원서는 添付書類와 함께 發明의 新規性 有無 및 技術的 審査를 받게 된다.

특허출원에 한대 査定은 관보에 公고된 날로부터 90日을 경과한 후부터 하게 되며 特許한다는 要旨의 確定査定도 관보에 公고하고 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發明의 重要性이나 出원자의 意思에 따라 20年, 15年, 또는 10年으로 區分된다.

특허권은 다음의 경우에 그 効力を 喪失한다.

- (1) 當該審査官의 宣言 또는 사정에 의하여 第3者의 權利를 侵害한다고 보았을 때
- (2) 특허권을 사정한 날로부터 1年 以上 實施하지 않았을 때
- (3) 特許權取得後 營業을 1年 동안 하지 않았을 때
- (4) 특허권자가 製造한 商品의 品質이 偽造品의 品質보다 낮을 때
- (5) 特許料 納入을 1回以上하지 않았을 때이다.

한편 특허권은 適當한 條件에서 讓渡할 수가 있고 특허권의 全部 또는 1部를 國內 全地域이나 1部地域을 指定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特許權侵害者로 본다.

- (1) 특허권의 목적이 되는 機械, 裝置 또는 장치를 構成하는 器具를 偽造한 者
- (2) 제품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 이것을 去來한 자
- (3) 특허권의 목적이 되는 生産品 또는 제조품을 위조한 자
- (4) 法院에서 虛偽宣言을 한 자
- (5) 虛偽特許表示를 한 자
- (6) 특허권의 목적이 되는 文學의 作品을 複寫하거나 複製한 자 등이다.

이 이외에도 被用者가 職務上 知得한 특허에 관계되는 物, 方法 또는 이들의 개량에 관한 使用者의 秘密을 漏泄하면 그 洩露자는 특허권침해의 共犯으로 推定하여 刑罰을 받게 된다. ♣